

강원관광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 입학전형의 전반적인 신입생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, 결정을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고 입학전형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요강 확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특성에 맞는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개발
3. 입학전형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입학전형제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조사, 연구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입학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 조 (구성) 위원회는 교학처장, 기획처장, 행정지원처장 및 각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2010.6.3)

제 4 조 (위원장)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획처장이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 다만,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2010.6.3)

제 5 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의 임기로 한다.

제 6 조 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(개정2010.6.3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7 조 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.(개정2010.6.3)

제 8 조 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획처 입학관리 담당자가 된다.(개정2010.6.3)

제 9 조 (업무관장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(개정2010.6.3)

제 10 조 (재정)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, 조사비, 여비,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시행)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(개정2010.6.3)

제 12 조 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실시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실시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